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2004. 3. 1
개정	2010. 4.
개정	2012.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6. 8. 29
개정	2017.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의 숙달을 통한 인격도야와 학문의 정진을 위하여 본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학생기숙사(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청강학사(여자)’, ‘비전학사(남자)’라 한다.

제3조(개관기간) 기숙사 개관기간은 본교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 또는 사감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 할 수 있다.

제4조(이용제한) ① 기숙사 폐관기간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총장 또는 사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생이외의 단체로서 기숙사의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생활동) ① 질서있고 명량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사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② 사생의 자치적인 사내활동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사생수칙) 사감은 기숙사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숙사 사생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학생복지위원회가 대신하며 위원장은 기숙사 관장이 맡는다.

② 학생복지위원회의 간사 외 기숙사 사항에 대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생수칙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생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으로 한다.

제3장 회계년도와 예산결산(삭제)

제11조(회계년도) (삭제)

제12조(예산 및 결산) (삭제)

제 4 장 조 직

제13조(조직) 본 기숙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감 1인, 직원 및 고용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4조(직무) ① 사감은 기숙사 관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직원은 사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사생을 지도 감독한다.

제 5 장 입사 및 퇴사

제15조(입사자격 및 신청)

①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총장 또는 사감이 인정한 자라야 한다.

② 재학생의 입사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CK4U를 통해 입사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③ 신입생의 입사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입시원서를 통해 입사신청을 한다.

제16조(입사생 선발기준) 입사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입생은 입학성적,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상·벌점,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 ③ 생활보호대상자, 국가 유공자, 소년·소녀가장들은 반영점수에 가산점을 주며 신체 장애인은 우선 선발한다.
- ④ 신입생과 재학생의 배정비율은 7대3으로 한다.
- ⑤ 스쿨별 기숙사 배정인원은 신입생의 경우 전년도 등록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재학생의 경우 선발 당시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 ⑥ 스쿨별 선발기준은 스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스쿨에서 기숙사 신청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숙사 탈락자 중 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한다.

제17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①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② 기숙사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 ③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 ④ 휴학 중인 자.
- ⑤ 제19조에 의한 당연(강제)퇴사자
- ⑥ 전 학기 입사하였던 자 중 별점이 10점 이상인 자(별점 10점 이상 취득 다음 학기 입사 제한)
- ⑦ 기타 사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징계) 사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생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징계는 사생수칙 위반 정도에 따라 별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처분한다.

- ①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이 규정 및 사생수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기숙사의 질서유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9조(퇴사)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 원서를 제출하여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퇴사** 처분하고 총장 또는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②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③ 납부금을 체납한 자.
- ④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⑤ 사생의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 사생은 기숙사 입퇴사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기숙사비를 납부 또는 환불받는다.

- ① 입사시는 당해연도에 책정된 기숙사비(입사보증금, 식대, 입사비, 관리비)를 납부한다. 중도입사시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기숙사비 분류	납부금액
관리비	당해연도 책정된 관리비를 중도입사일 기준 남은기간 일할계산해서 납부
입사비, 보증금	당해연도 책정된 금액 전액 납부
식대	신청자에 한해 중도입사일 기준 남은 식수만큼 납부

② 퇴사시는 입사비를 제외한 입사보증금, 잔여 식대, 잔여 관리비를 환불받으며. 관리비 환불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단, 당연퇴사의 경우 관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학사개시전	학사개시일 4주경과전	학사개시일 4주 경과 후 8주 경과 전	학사개시일 8주 경과 후 12주 경과 전	학사개시일 12주 경과 후
전 액	3/4	1/2	1/4	반환하지 아니함

③ 중도퇴사자의 식대환불은 퇴사 시 남은 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전체를 환불한다.

제21조(외박 및 외출) ① 평일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말 및 휴일의 외박은 종합정보시스템(CK4U)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비품 및 시설물 사용) ① 각 실의 비품이 파손 됐을 경우 사감 또는 직원에게 보고한 후 교환할 수 있으며,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벽에 못을 박거나 규정된 이외의 시설을 할 수 없으며, 공용물의 파손, 분실시에는 개인이 변상한다.

제 6 장 사생 자치회

제23조(구성) 기숙사에는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내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총장 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 사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임무) 사생 자치회는 학문탐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할 임무를 갖는다.

- ① 자율점호 및 면학 분위기에 관한 사항
- ② 사내생활의 질서유지 및 사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 ③ 사생 자치회 행사에 관한 사항
- ④ 사생회비 책정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